

의안번호	제 123 호
의 결 연 월 일	2015년 1월 일 (제337회)

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이의영 의원 등 7명
발의연월일	2015년 1월 19일

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의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5년 1월 19일

발 의 자 : 이의영·이양섭·김학철·김인수·
박우양·황규철·김봉희 의원(7명)

1. 제안 이유

- 2015년 1월 1일자로 ‘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’ 및 동
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농업기술원의 부장 직위가 국장으로
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‘연구개발부장’ ⇒ ‘연구개발국장’, ‘기술지원부장’ ⇒
‘기술지원국장’ 으로 개정(안 제18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5.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6. 관련부서 협의 : 농업기술원과 협의

7. 입법예고사항 :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4항 중 “연구개발부장” 을 “연구개발국장” 으로 “기술지원부장” 을 “기술지원국장” 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~ 제17조(생 략)</p> <p>제18조(위원회의 설치) 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원의 <u>연구개발부장, 기술지원부장</u>이 되며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⑤ (생 략)</p>	<p>제1조 ~ 제17조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8조(위원회의 설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연구개발국장, 기술지원국장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
관 계 법 령

□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[시행일 : 2015-01-01]

제21조(원장) 농업기술원장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의2에 따라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

제22조(하부조직) ① 농업기술원에 행정지원과, 연구개발국, 기술지원국을 둔다.

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, 연구개발국장은 농업연구관으로, 기술지원국장은 농촌지도관으로, 감사시험장장은 지방농업사무관·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.